#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연구

2022. 10.

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제 출 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0. 27.

연구책임 : 신 열 (목원대 교수)

연구참여 : 서재권 (전통문화대 교수)

김성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홍성준 (성균관대 박사수료)

## <제목 차례>

1.	서논	1
1	. 목적 및 배경	3
2	. 연구범위와 내용	4
3	. 연구방법	8
4	. 연구의 기대효과 및 결과물	· 11
Ι.	예술인권리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	13
1	.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배경	· 15
2	예술인의 의의	· 16
3	. 예술인의 권리	· 21
4	.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 26
Ш.	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29
1	. 문화영향 평가	. 31
2	부패영향평가	. 36
3	. 인권영향평가	· 45
4	. 성별영향평가	· 52
5	. 유사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 60
IV.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설계	67
1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두 범주·······	. 69

2. 예술인권리 보장 체계 구축	··· 73
3.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구분	··· 75
V.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전략설계 개발·······	··· 79
1. 영향평가의 계획수립	···· 81
2. 위원회의 구성·운영 ···································	87
3.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개발	87
4. 영향평가 결과분석	··· 93
5. 영향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 97
Ⅵ. 결론····································	99
참고문헌	101
부록: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체크리스트(예시)·············	102

## <표 차례>

〈丑	3-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유형 및 특성	33
<丑	3-2>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괄	35
<丑	3-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의 기관별 역할분담	39
<丑	3-4>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4단계와 세부절차	49
<丑	3-5>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요약	53
<丑	3-6>	성별영향평가의 점검 지표 요약	58
<丑	3-7>	성별영향평가의 점검항목 및 세부내용 요약	59
<丑	3-8>	기존 영향평가 제도의 비교 요약	61
<丑	4-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현황(19개 기관)	71
<丑	4-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현황(31개 기관)	71
<丑	4-3>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1,256개 기관)	72
<丑	4-4>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주체로서 기관의 예시	72
<丑	4-5>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사업차원)의 영향평가 지표 세분화 방향	77
<丑	5-1>	예술인권리 경영 단계적 추진 절차: 예시	83
<丑	5-2>	예술인권리 경영을 위한 영향평가의 개괄적 업무흐름도	84
<丑	5-3>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체크리스트 개발) 추진프로세스 예시	88
<丑	5-4>	본 연구의 체크리스트 구성 요약	90
<丑	5-5>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업무추진 흐름도: 예시	91
<丑	5-6>	체크리스트 응답 항목별 진단 의미 요약	92
<丑	5-7>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총괄표 작성 예시	95
<丑	5-8>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개선 및 개선권고 사항 작성 예시	97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추진전략 10
<그림	3-1>	문화영향평가의 개념도32
<그림	3-2>	문화영향평가 평가절차도: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34
<그림	3-3>	문화영향평가 방법 요약36
<그림	3-4>	부패영향평가의 절차1 40
<그림	3-5>	부패영향평가의 절차2 40
<그림	3-6>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요약 55
<그림	4-1>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추진체계의 개념적 예시 75
<그림	5-1>	본 연구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념도90
<그림	5-2>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총괄표 작성 예시 95

# I . 서론

1.	목적 및 배경	3
2.	연구범위와 내용	1
3.	연구방법 {	3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결과물11	1

## 1. 서론

## 1. 목적 및 배경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는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22.9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될 예정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평가 대상기관(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과 대상사업(예술지원사업)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예술인권리영향'의 개념도 추상적인 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술인권리영향의 개념 정의 및 유형화, 평가목적 및 평가기준의 명확한 설정, 대상사업 등에 대한 범위 재설정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필요
- 따라서 이 연구는 예술인인권보장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해당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법 제정 취지와 실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지침서(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실질 적인 예술인의 인권 및 권리보호와 이들과 관계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의 위축되지 않는 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 탐색을 지향하고자 함
- 특히, 예술인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인권 및 권리보호의 환경조성이 단순히 법의 제정만이 아닌, 실제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대안 강구를 목적으로 함

#### 2. 연구범위와 내용

#### 1) 연구범위

- 연구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 그리고 대상적 범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은 이 과제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활용에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4개월)을 의도하지만, 법 제정 및 시행의 취지와 과거의 경험 또는 유사사례로 인해 정립된 '인권', '인권영향' 그리고 '영향평가' 등의 유사개념 과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 사항도 고려할 수 있음

#### ○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는 제안요청서상에 제시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추진 예정임. 제안요청사항에는 '예술인 권리', '예술인권리영향(평가)' 등의 개념적 정립부터 유형화, 실제 적용을 위한 지침과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의 설계 및 적용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이 과제의 내용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필요성 및 목적
- ② 예술인권리 영향 개념 정의 및 유형화
- ③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환경 및 사례 분석
- 예술지원사업 현황 및 예술인권리 영향 환경 분석
- 타 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ex) 문화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 ④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운영 방안

-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유형화
- 평가 수행 주체 및 평가 절차
- 평가 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문항
- \* ex) 예술인 차별 가능성, 예술인권리 침해 가능성, 예술지원사업 집행의 공정성
- 평가서 작성 양식(안)
- ⑤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활용 및 환류 방안

#### ㅇ 대상적 범위

- 이 과제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대상인 국가 기관 및 예술지원기관(평가대상기관)과 예술지원사업(대상사업) 등에 적용 가능해야 함
- 따라서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이 활용가능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지표를 만드는 것과 평가지표가 평가대상사업인 예술지원사업을 포괄 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함

#### 2) 연구내용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제도 자체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개념적 구체화 필요
  -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하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념일지 아니면 별도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개념화를 추진해야 할지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통해 접근
  - ※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공공기관인권경영가이드라인, 2021)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기업이 연루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인권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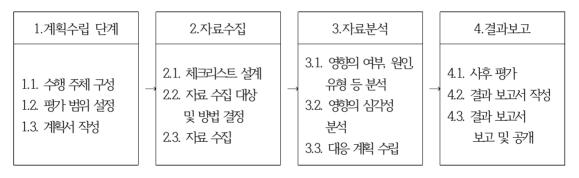
주의할 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ssessment)'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상당주의의무 이행 절차의 일환으로 '인권영향을 평가(assessing human rights impact)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중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와 '인권영향을 평가 (assessing human rights impact)'를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 금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를 좁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혹은 정식 인권영향평가로 후자를 넓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로 부르려고 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중에 정식 인권영향평가가 아닌 것은 간이 인권영향평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기존의 인권개념 및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차별화된 '예술인'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개념의 구체화를 추진
- 이를 위해 연구진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예술지원기관과 수혜집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전략으로 과제 수행
- 인권경영에서 인권영향평가의 범주는 기관전체 차원과 주요사업차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음
  - 법 제정 취지 역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국가 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으로 대상을 구분할 뿐 아니라, 예술지원사업 역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관차원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예술지원사업)차원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평가의 목적, 방법, 평가지표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적으로 인권경영의 영향평가실시는 크게 4가지 이행단계에 세분화된 12개 세부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도 이러한 큰 흐름을 준용하되,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보다 두텁게 할 수 있는 대안과 과정 및 절차상의 내용을 반영
     하고자 함

- 기존 공공기관들이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여, 본 과제의 주제인 '예술인권리'보장과 관련한 특수성과 개별성 그리고 인권보장의 일반적 내용의 조화를 지향할 예정
-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과정과 각 과정(단계)별 핵심 점검방향과 점검사항에 대해 예시적으로 소개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유사제도의 배경하에서 시작하되, 예술인권리 보장의 주제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의 추가 및 보완 그리고 구체화 등을 지향할 것임

#### ※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의 과정 요약



- 이러한 단계마다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5가지 원칙 '참여성, 투명성, 책무성, 포괄성, 중대성'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5가지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을 본 과업에서 각 단계별 점검 활동에 반영하여 제안 결과의 완성도 제고를 추진
- 본 연구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지침과 가이드를 명확하게 준다는 점에서 선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기초로하되, 예술인의 권리보호의 가치와 현장에서 원활한 이행이 가능한 영향평가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전략으로 진행 예정
  - 전략적으로 인권경영지침의 일반적인 틀을 유지하여 유사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예술지원사업 주체들의 혼란 최소화 지향

- 예술인의 권리라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적용가능한대안 도출을 지향
- 방법론상으로 기존 제도와 문헌 등 전문가적 관점과 더불어 이해당사 자인 예술지원사업 추진 주체와 참여대상자와 소통을 통해 최종 결과물 도출

### 3. 연구방법

#### 1) 접근방향

-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진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실성있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설계를 지향함
  - 단순한 연구결과물의 도출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형태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 지향
- 연구결과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사 제도인 인권(경영)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문화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를 분석하여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기본적 틀을 구성하고자 함
  - 본 과업과 가장 직접적일 수 있는 인권(경영)영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이 연구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법 제정 취지 등을 발주기관과 소통하여 반영 추진
- 또한 실용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이론적·제도적 접근 이외에 정부 및 예술 지원기관 업무담당자, 예술지원사업 참여·수혜자 그리고 전문가 등과 열린 소통을 통해 평가제도의 설계를 진행하고자 함
  - 본 과업에서 도출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이 현장에 적용될 때, 이해당사자들의 유·불리 또는 불필요한 업무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예정
  - 1회 과제로 완성도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적 관점의 제도 안착 방안까지 고민

- 잠정적으로 도출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제고
  - 문헌과 제도적 취지에 따른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공유와 의견수렴 추진
  - 이 과정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초기 제도 안착에 기여
- 제도 운영 및 환류에 대한 관리 체계까지 고민
  -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에 대해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영향평가결과의 보고와 환류 등에도 인권경영위원회가 주도적·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사례 다수 확인
  - 기관별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은 내·외부의 다양한 참여를 전제하나, 내부보다는 외부전문가(예로,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노무사 등 근로자 권익보호자 등)가 다수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별 개선과제의 도출과 사전 예방적 추진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
- 이상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본 과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음

현장 적합형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운영 - 인권 - 문화영향평가 이론적 접근 - 영향평가 제도적 접근 - 부패영향평가 - 제도설계론 - 인권영향평가 과업의 핵심 내용 1. 평가목적과 지향가치 규명 예술사업 예술지원 2. 평가대상의 유형화 지원주체 수혜집단 3. 체크리스트 및 평가지표(안)의 개발 4. 제도 운영의 설계 등 평가 실행 평가결과 관리 결과 환류 및 개선

<그림 1-1> 연구추진전략

####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과 선행 제도에 대한 분석 등 문헌 및 현황조사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한 연구결과물의 현장 실행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어 진행함
  - 따라서, 방법론상으로 문헌 및 선행 제도 등에 대해 분석하는 문헌 및 현황 조사와 이해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 또는 핵심 opinion leaders를 중심으로 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을 혼용하고자 함
- 먼저, 문헌 및 현황조사 등을 통해 기존의 인권 또는 영향평가 등에 대한 논리를 확인하고 본 과업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탐색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
  -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관련 문헌 등 조사를 통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목적 및 개념 등 명확화
  - 타 정책 영향평가제도 운영사례 분석(ex: 문화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 평가 등)을 통한 제도 운영방안 마련

- 핵심과업 중 하나인 예술인권리 보호 및 보장의 영향수준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작성과 영향평가지표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 및 타 정책영향 평가 제도 운영자 의견을 청취할 뿐 아니라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 추진
  - 전문가 및 타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 특히 예술인들과 지원기관의 담당자(그리고 감사부서 담당자 등)들에 대해 FGI를 통해 본 과업이 제시하는 대안의 현실성과 실행력 강화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결과물

- 연구의 추진에 따라 이제 막 제도로 정착되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가 정부와 문화예술지원기관 그리고 참여자들이 수용가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단순한 연구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제출을 넘어 실질적인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존의 경험을 실무적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기여하고자 함
- 정부가 지향하는 예술인의 권리 및 인권과 고용 그리고 정당한 근로여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기본적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담고,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제도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상화된 예술인권리영향의 개념과 유형화, 영향평가의 목적과 지향 가치 그리고 평가제도 설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룸
  - 특히, 예술인의 권리영향평가라는 점에서 평가대상기관인 정부 및 예술 사업지원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 그리고 '제도운영 설계'(영향평가 운영주체와 구성, 평가대상, 평가지표와 체크리스트, 측정을 통한 보고서 도출, 도출된 보고서의 활용과 환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룸

- 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틀은 평가대상기관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형태로 결과물 도출 예정
- 인권경영차원에서 현재 다수 활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크 리스트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인권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그리고 고충처리 매커니즘 등 5개 영역에서 제시됨
  - 인권경영에서 체크리스트는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기관별 이행수준을 진단하는 형태이고, 인권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이 중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기관운영 전반과 사업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기존 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인권경영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분석을 토대로 본 과업에 부합하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지표 및 체크 리스트 설계 예정
  - 이를 위해 타 분야 영향평가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예술인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체크리스트 및 영향평가 지표를 설계 추진

1.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배경	15
2.	예술인의 의의	16
3.	예술인의 권리	21
4.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26

## II. 예술인권리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 1. 예술인권리보장법률 배경

-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의미
  - 제2항은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창작자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sup>1)</sup>
  - 또한 제2항은 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다른 권리들을 보장하는 규정이기도 함
- 예술의 자유와 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22조를 구체화시키는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대부분 예술 산업, 예술 작품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술인'자체의 보호에 대하여는 소홀한 측면이 확인되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예술인 자체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등이 입법되었으나 예술인복지법 역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등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20. 6. 1. 국회에서 발의된

<sup>1)</sup> 서경미,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2019. 12.), 182쪽 국문초록.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1. 9. 24. 제정되고 2022. 9. 25 시행되었음

-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그 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 함이 있는 입법체계 하에서,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등을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러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법규들의 존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제도 및 법규들을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해당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취지와 그 의의를 예술인의 정의와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이론적 및 법적, 제도적 측면을 통해 간략 하게 서술함

### 2. 예술인의 의의

#### 1) 이론적 측면

- 1948년 제헌헌법이 예술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된다는
   것을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술인의 권리를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예술이라는 영역, 그리고 예술인이라는 직군의 특수성 때문임

- 예술은 선사시대에 동굴에 돌조각으로 그림을 새기기 시작한 때부터, 즉
   인류의 시작점부터 인류와 함께하였으나 그것이 취미의 영역을 벗어나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
  - 또한 현재에도 여전히 예술은 취미와 직업의 영역이 교차하는 어딘가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고 있음
  - 이것은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과 시간, 그리고 그 작품이 대중에게 인정받기까지의 과정과 시간이 다른 영역과는 차별화될 정도로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러한 과정, 즉 창작과 대중의 평가라는 과정 어딘가에 있는 사람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술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이러한 예술의 광범위함이 바로 예술가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로도 인식됨
- 특히 예술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회화에서 사진으로, 연극에서 영화로,
   그 장르를 계속하여 확장시켜 왔음
  - 역사적으로 예술 및 예술인을 이론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정의하려는 시도는 숱하게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 예술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유튜버를 예술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작업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임
  - 이론적으로는 숱한 논의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끝나기 힘든 논의이지만 법적으로는 수많은 시도 끝에 나름의 결실을 맺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2) 법·제도적 측면

#### (1) 예술인복지법

-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2011. 11. 17. 제정되고 2012. 11. 18.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시도되었음
  - 예술인복지법은 제2조²)를 통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 다."고 정의함
  - 이때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sup>3)</sup>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하며 이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및 만화 등을 의미함
- '예술'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 법의 수혜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음
  - 이 부분은 법 시행의 전제와 같은 문제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sup>2)</sup> 예술인복지법[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77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sup>1. &</sup>quot;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sup>2. &</sup>quot;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sup>3. &</sup>quot;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sup>4. &</sup>quot;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sup>3)</sup>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sup>1. &</sup>quot;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혹은 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함4)
- 예술인복지법이 보호하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혹은 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국한됨
  - 이는 예술인복지법이 한정된 재원이 소요되는 예술인 복지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어서 예술 활동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그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로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예술인 활동 증명의 기준은 예술 활동 성격과 기간 및 실적을 따져서 엄격히 관리됨을 알 수 있음<sup>5)</sup>
  - 따라서 비록 예술인복지법의 성격적 한계이기는 하지만, 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예술인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술인,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복귀하는 예술인 등은 소외될 수 있음

<sup>4)</sup>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예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sup>1. 「</sup>저작권법」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sup>2.</sup>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sup>3.</sup> 삭제 <2014. 3. 28.>

<sup>4.</sup> 삭제 <2014. 3. 28.>

<sup>5.</sup> 삭제 <2014. 3. 28.>

<sup>6.</sup>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

<sup>5)</sup> 지면상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중 문학 부분만 발췌

-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예술사회의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법적 외연을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 현실임

#### (2) 예술인권리보장법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법적으로 예술인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음
  - 이는 예술인복지법이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sup>6)</sup>에서의 예술인의 정의인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계약을 맺은 자'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임
  - 이는 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예술인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술인,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복귀하는 예술인 등 기존의 법

<sup>1.</sup>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저작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ul> <li>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li> <li>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소설),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li> </ul>

<sup>6)</sup>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sup>3. &</sup>quot;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체계 내에서는 보호되기 어려웠던 예술사회의 취약계층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함
  - 이는 하위법령을 통해 혹은 법해석을 통해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며, 지속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음

### 3. 예술인의 권리

#### 1) 이론적 측면

-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 존재
  -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예술의 외연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으며, 분야는 다양해져 가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다변하는 예술 및 예술인을 법, 제도의 울타리 내로 포섭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예술인의 권리'는 법지정학상 폭넓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예술인 및 예술사회가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측면에서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입법적 과제는 결국 헌법적 기본권들 중에서 예술인 및 예술사회의 특성상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의 기본권들을 선별하여 구체적인 법률로써 예술인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임
  - 이러한 기본권들에 대하여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등 여러 사건을 통하여 적어도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성차별 및 성침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성평등적 측면의
   보호를 골자로 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입법되었음
  - 이하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배경과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법,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예술인의 권리를 살펴보도록 함

#### 2) 법, 제도적 측면

#### (1)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배경

- 예술인권리보장법 이전에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으로는 저작권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있음
  - 저작권법은 예술활동을 통한 결과물인 창작물 및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예술인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외에도 고용보험법7) 등에서 예술인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예전 부터 계속되었음
  - '예술계 미투 운동'과 '블랙리스트 사태'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본격 적으로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sup>7)</sup> 고용보험법[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3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 6. 9.>

#### (2)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구성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음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2조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술인권리 침해행위'에 대해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및 예술교육활동을 하면서 입을 수 있는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 하였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크게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제2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제3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제4장)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 보호관을 지정하는 등 예술인권리구제 기구를 설치하여(제5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규정하였고,
  - 구제 및 시정조치(제6장)를 통해 이러한 권리보장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후조치를 규정하였음
-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등의 영역임
  - 이는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그동안 법률로 구체화되지 못했던 예술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성평등적 측면과 그대로 대응시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함으로 해석될 수 있음

#### (3)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통해 공무원과 예술기관 등의 엄격한 의무를 적시하고 있음
  - 공무원이나 예술지원기관 등이 폭행, 협박 등으로 예술활동 및 그 성과의

전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제7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제8조)
-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정성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제9조)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및 그 성과의 전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음
- 특히, 예술인의 공정성 침해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예술의 자유와 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나아가 예술인지원사업의 차별을 금지하며 공정성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에서 한단계 나아가 침해를 규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과 공정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4) 예술인의 직업의 자유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동법 제10조부터 제15조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제11조),
  - 예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인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제 12조),
  - 불공정행위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를 금지하며(제13조, 제14조), 국가 기관 등이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방법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 부분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의의는,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대한
   규정을 일정 부분 해냈다는 것임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제10조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첫째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제1항),

- 둘째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할 권리(제2항),
- 셋째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제3항)로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 (5) 성평등한 예술 환경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성평등에 기반한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통하여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할 것과(제1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규정하고(제17조),
  -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제19조)와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통하여 (제18조)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법적 근거가 이미 형법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기존 법체계 내에 규정한 것과 별개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특성과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전문가를 통해 성과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예술사회의 특성을 인식한 내용으로 판단됨
  - 이러한 예술계의 특징으로 인해 '예술계 미투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예술계의 성적 불평등과 성적 침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됨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계의 특성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성적 불평등
 및 침해를 다시금 확인하고 규정하여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 성적 불평등 및 침해에 대하여 예술인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4.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술인의 의의와 권리를 법과 제도 내로 포섭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많은 부분 규정함
  - 그러나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실현되기 위하려면 입법 뿐 아니라 제도 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11조 제3항에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기 관, 예술지원기관 등 이해관계인들이 실무적으로 예술지원사업을 시행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라는 기준을 통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8)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을 명시화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즉,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는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과
  -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예술인권리 영향 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 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sup>8)</sup>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sup>9</sup>).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통하여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직업의 자유, 성평등한 예술 환경 등 추상적일 수 있는 예술인의 의의 및 권리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범자인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식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실용적 내용, 제도운영 방안과 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 등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함

<sup>9)</sup>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9. 25.] [대통령령 제32911호, 2022. 9. 20., 제정]

제4조(예술인권리 영향평가)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up>1.</sup>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sup>2.</sup>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sup>3.</sup>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 보호 시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권리형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Ⅲ. 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1. 문화영향 평가 31
2. 부패영향평가 36
3. 인권영향평가45
4. 성별영향평가 52
5. 유사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60

# Ⅲ. 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 1. 문화영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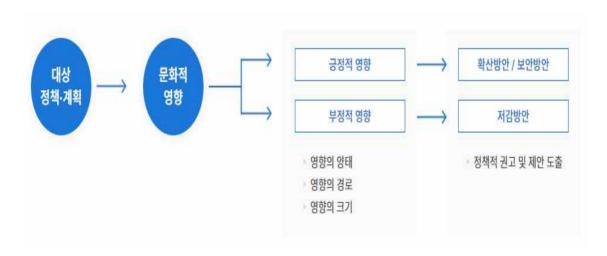
#### 1) 개념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제도임
-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각종 계획과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책의 형성을 유도·지원을 지향
-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있음

#### 2) 목적

- 문화영향평가는 정부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다음과 같이 3가지 가치로 요약할 수 있음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
  -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

<그림 3-1> 문화영향평가의 개념도



#### 3) 대상

- 문화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사업이나 계획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경우로 다음과 같이 유 형화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으로 「문화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나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으로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 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등

#### 4) 유형

- 문화영향평가는 시행주체, 형식 그리고 평가수준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
  - 평가 시행주체에 의한 구분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로 구분
  - 평가 형식에 의한 구분으로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가 수행하는 자체 평가와 전문적인 제3의 기관이 수행하는 전문평가로 구분

평가유형	내 용
자체평가 (진단평가,약식평가)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방식
전문평가 (기본평가,심층평가, 전략평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

- 평가 심도(수준)에 의한 구분으로 평가대상 정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 등을 차등 적용하여 자체평가를 진단 평가와 약식평가로 구분, 전문평가를 기본평가·심층평가·전략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유형 및 특성

구분	평가유형 및 특징			
	자체	평가	전문	평가
평가형식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방식			을 심도 있게 분석할 · 대상으로 전문성을 경가를 수행하는 방식
허키시트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전략평가
평가심도	수준진단	기초수준	보통수준	종합수준
평가주체	정책소관기관 담당자+전문가자문단 검토	정책소관기관 담당자+전문가평가위 원평가	제3의 전문평가수행기관(전 문가평가단 평가)	제3의 전문평가수행기관(전 문평가단 평가정책담당자
평가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2개월		5~6개월

# 5) 평가절차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검토 후 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자체평가(진단평가, 약식평가) 지침에 따라 스스로평가서 작성
- 작성한 평가서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최종 결과 통보.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2> 문화영향평가 평가절차도: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 6) 평가지표

○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3대 영역(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6개 지표로 구성되는 자체평가지표(공통지표)와 이외 특성화 지표를 포함하는 전문평가지표로 구분 가능

# ○ 문화영향평가지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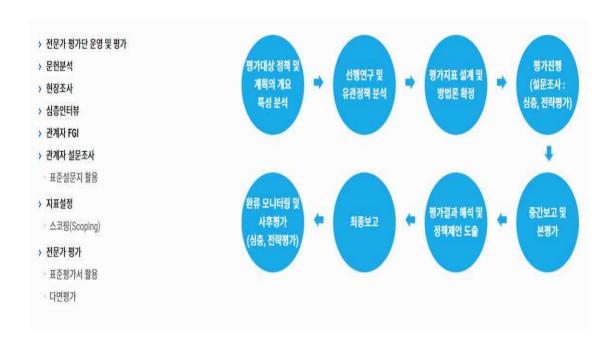
<표 3-2>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괄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에 부정적 영향은 미치는가?  - 사업으로 문화접근성이 저하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표현기회와 창작활동이 저하되는가? - 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시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기본적 가치에 훼손을 주었는가? -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향휴할 권리가 저해되는가?
공통지표	문화정체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문화를 훼손하는가?  - 사업으로 사회적 관계 속 구성원 간 분열과 대립이 유발되는가?  - 사회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 문화예술인과 지역단체간 교류와 협력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지역 내 문화적 획일화에 영향을 주는가?  -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내 소수집단의 문화적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가?  - 사업으로 문화소비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파생될 수 있는가?
	<b>판</b> 와털신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사회구성원의 창의성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 사업이 지역사회 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미치는가?
특성화지표	※ 평가대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 7) 평가방법

○ 문화영향평가 특히, 심층평가는 전문가평가단 운영을 통한 평가를 하며, 평가방법으로 문헌분석,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관계자 FGI, 그리고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이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3> 문화영향평가 방법 요약



# 2. 부패영향평가

#### 1) 개념

-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 사안별 사후 적발 및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부패 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음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가 필요함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요청,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 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 2) 목적

- 법령 내 불필요하게 사용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입안·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재량을 적정화하고,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및 법령의 예측 가능성 제고

#### 3)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법령으로 그 규정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는 점을 고려 필요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 제·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 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현행 법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 현행 행정규칙은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 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도 대상인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내부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표 3-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의 기관별 역할분담

구	는 문	각7만	국민권위원회
제개정 법량안 평가	재.개정 법량안	-관계만 협의 단계시 부패병하당가 요청	-입법에고 종료알까지 통상 10일 이내 평가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 행규정도 병량평가
लेखिल	<i>중</i> 장기 평계획	-햔방법령 등에 대한 평 대상 과제 제출	- 중장 명 계획 수립 - 중장   평 1 위에 선정 및 평 1
चॅंठेंच <b>ं</b> ठं ।	<u>ক্</u> টোসা	국민단의 유청시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대응
하다	재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차가 곤란한 경우 국민단익 위원회에 평가 요청	-평가매뉴얼개발/보급/교육 -평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는 법량안 평에준해통상40일이나에평가
평	현행 행정규칙	-국민권약위원회 요청시 평가관련 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만 평가시 관련 행정 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 명기	재개정 자: 법규	- 자율 평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차가 곤란한 경우 국민단익 위원회에 평가 요청	-저제당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하	현행 자 <b>대</b>	-국민단의원회 요청시 평가관련 자료 제출	- 부패2발2인이 있는 자 법규 선정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재.개정 내부규정	- 자율 평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차가 곤란한 경우 국민단익 위원회에 평가 요청	-저렇나면 있다는 기반/보급/교육 - 평 요청 받은 정관사규 평 가
평가	현행 내 <del>부규</del> 정	-국민단의원회 요청시 평가관련 자료 제출공광 만 등의 내뷰규정만 대상	-부패(받으인이 있는 내부 규정 선정평가

# 4)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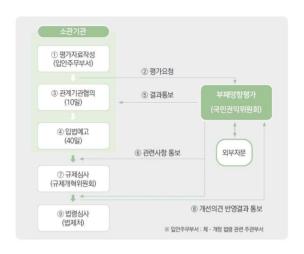
- 부패영향평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 5) 평가절차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절차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는 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결과를 권고, 통보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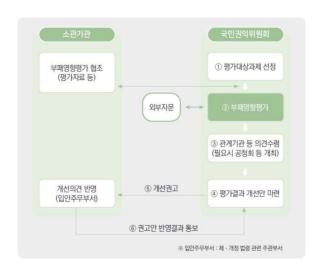
○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4> 부패영향평가의 절차1



-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중장기 계획에 의거 소관 기관에 영향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구체적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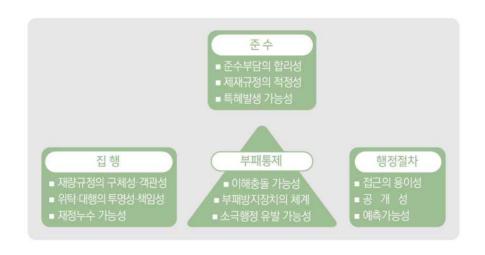
<그림 3-5> 부패영향평가의 절차2



-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는 재·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로 구분. 기본적으로 전자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하고 개선 및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체 정비가 곤란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여 처리. 다만 현행규칙은 국민 권익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받아 권고하는 형태
  -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는 통상 4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 요청받는 행정규칙의 평가를 완료하여 해당기관에 서면 으로 통보
  -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받는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결과를 소관기관에 협의를 통해 권고
     (안) 형태로 서면 통보

### 6) 평가지표(평가기준)

○ 부패영향평가의 지표(기준)은 크게 4가지 영역- '준수, 집행, 부패통제, 행정절차' 등으로 구성



# ○ 4개 영역별로 평가항목과 주요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 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 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 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 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 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 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 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 어 있는지 여부

# -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 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 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 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 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 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7) 평가방법

-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앞서 제시한 3개 유형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평가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여 제시
  - 일차적으로 행정기관이 자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운염

# (1) 평가기간

- 평가기간은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 ※ 평가기간 연장사유: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 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2) 평가방법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 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 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규제 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 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하여 각 업무에 활용 토록 할 수 있음

####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 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 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 3. 인권영향평가

#### 1) 개념

-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기업이 연루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인권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으로 인식
  - 즉,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중 참여 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임
-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와 '인권영향을 평가 (assessing human rights impact)'등 개념적 혼란이 있음
  - 전자는 좁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혹은 정식 인권영향평가로, 후자를 넓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정의
  - 이러한 구분이 의미는 모든 공공기관이 규모와 사업 환경과 속한 산업 등 공공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 정도가 다르고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 정도가 다르다면 인권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정도도 다르다는 점 인식 필요

#### 2) 목적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최소한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과 국제노동기구의핵심 협약(결 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에 관한 8개의 핵심 협약)상의 인권에 대한 확보를 의도함
- 국제권리장전인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그리고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자기결정권
  -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및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가정 보호와 혼인에 대한 권리 (아동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생명권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와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 고문, 굴욕적, 비인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전쟁을 위한 선전 및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혐오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 공무에 참여할 권리
  - 소수자의 권리
  - 노동의 권리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음식, 주거, 물, 위생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 교육에 관한 권리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로부터 오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식별된 인권영향에 대응해서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이행을 통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함
  - '평가'역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되며, 이 식별과 대응 계획에 수반하는 일련의 단계와 절차가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평가를 의미

#### 3) 대상

-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영향을 평가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고 인권 위험이
   높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 속해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정식 인권영향
   평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반대로 규모가 크고 인권 위험이 높은 산업과 지역에 속해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 간이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함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인권영향평가는 대상적 규명보다는 방법적으로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에 의해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정식 인권영향평가는 규모가큰 공공기관이나 그러한 기업에 대출·보증·보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을의미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관
- 이외의 기타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도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식 인권영향평가 필요

-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의 관련 사업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와 연루되어 있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의 존재

### 4) 유형

-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경영 담당자나 인권경영
   부서뿐 아니라 인권경영위원회나 관련 사업 부서, 감사실, 컨설팅 업체와
   같은 외부 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일정한 역할 담당 필요
  - 인권영향평가 제도 설계시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 내포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기관
   운영과 주요사업으로 유형화
  - 이러한 구분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의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이라는 제약 존재
- 인권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선정임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아니라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가장 인권 위험이 높은 사업임
  -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영향평가의 일반으로 인식되는 점 개선 필요

#### 5) 평가절차

-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단계는 다양하게 범주화 가능
  - 세계은행의 인권영향평가 연구(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보고서는 9단계를 제시
  - 1)준비(preparation), 2)선별(screening), 3)범위설정(scoping), 4)증거 수집 (evidence gathering), 5)(이해관계자와의) 협의(consultation), 6)분석 (analysis), 7)결론과 권고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8)(인권영향

- 평가 자체에 대한)사후 평가와 모니터링(evaluation and monitoring), 9) 결과 보고서의 준비(preparation of the report)
- IFC와 IBLF의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는 7단계-1)준비, 2)식별, 3)(이해관계자의) 참여, 4)평가, 5) 저감, 6)관리, 7)(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사후 평가 등으로 구분
-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의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5단계 1) 계획과 범위 설정, 2)자료 수집과 기준 파악(baseline development), 3) 영향 분석 4)영향 저감과 관리, 5)보고 및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사후 평가 등으로 구분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단계를 1)계획수립, 2)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3)체크리스트 교육, 4)자료 제출, 5)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6)결과 보고서 보고 및 공개로 제시 하고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의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단계를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보고의 4단계로 범주화

<표 3-4>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4단계와 세부절차

단계	절차 및 내용
계획수립	- 수행 주체구성 - 범위설정(평가대상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인권 이슈) - 계획서 작성
자료수집	- 체크리스트 설계 - 자료수집대상과 방법 결정 - 자료수집
자료분석	- 영향 여부, 대상, 유형, 원인 등 분석 - 영향 심각성 분석 - 대응계획수립(모니터링 계획과 고충처리 절차 개선 계획 포함)
결과공개	<ul><li>사후평가</li><li>결과보고서 작성</li><li>결과보고서 보고 및 공개</li></ul>

#### 6) 평가지표

- 세부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는 기관마다 상이하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 중 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여 선정하도록 유도
  - 이하에서는 원론적인 인권영향평가의 핵심 관점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는 별도 예시할 계획

#### ㅇ 참여성

-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의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
-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혹은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는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를 통한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이라는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부정적인 인권영향 식별이라는 1차적인 목적도 달성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
- 평가지표로 참여성은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참여의 주체가 되는 이해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권리주체와 의무 주체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분 가능. 핵심은 권리주체로 이해관계자임

#### ○ 투명성

- 투명성은 이해관계자가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권영향평가의 초기 단계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기관은 식별한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평가의 분석 결과와 그 대응계획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개할 필요 존재
- 평가결과 정보 접근권은 참여성 보장의 전제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인권이므로 이해관계자의 특성(시각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 필요

#### ㅇ 책무성

-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받은(을) 사람들의 권리가 구제되고(또한 권리침해가 예방되고), 나아가 의무 주체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인권영향 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운영 필요
- 책무성은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 이행 가능성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책무성은 인권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규범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의미

#### ㅇ 포괄성

- '인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으로 최소한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그리고 ILO의 핵심 8대 협약상의 인권을 포함되어야함. 또한 '영향'은 실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잠재적인 영향도 포함되며, 공공기관이 '야기'한 영향뿐 아니라 '기여'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영향도 포함
- '평가'역시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별된 인권 영향의 정도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대응 계획 수립을 넘어 이러한 과정의 부수적인 절차를 포괄하는 것이 어야 함

#### ㅇ 중대성

- 모두 인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없고 식별된 모든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 따라서 인권영향평가를 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 대두
-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중대성이다. 중대성의 판단 기준은 (잠재적인 인권영향의)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실제적 인권영향의) 심각성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가능성과 심각성 중에서는 심각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각성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회복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음

# 7) 평가방법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크게 문헌, 이해관계자 그리고 현장이 있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자료 수집의 대상에 따라 문헌 조사, 인터뷰(개별 인터 뷰와 초점 그룹 인터뷰)와 설문 조사, 방문 조사가 있음

### 4. 성별영향평가

#### 1) 개념

-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근거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을 들 수 있음
- 제도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고, 2004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됨.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07에는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음
- 2008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운영규정(제정 2008.3.1, 여성부훈령 제2호)에 따라 성별 영향 평가 자문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관 지정을 하였고,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내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3) 대상

-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각종 법령, 계획 그리고 정부가 수행하는 세부사업 등이 포함됨.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포함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의 세부사업 등

#### 4) 유형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에 대한 평가 별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이 있음
- 이러한 유형을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5>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요약

평.	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 영향 평가	중앙정부	성별영향평가 실시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시)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정책개선 실적 관리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처별 성평등목표를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협의

		T. C.	1	
	지자체	<사업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 성별 영향 평가	중앙정부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 계획 통보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반영결과 점검	
	지자체	<생별영향평가책임관>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 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사업담당부서>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 계획 통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다음년도 2월말)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국무회의)     국회 제출 및 공표	

#### 5) 평가절차

- 성별영향평가의 절차는 평가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논의를 단순화하고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평가서와 체크리스트 작성의 경우를 가정하여 제시함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이 제외되는 대상은 단순하게 체크리스트 작성 제 출과 작성제외법령 여부 통보로 간단하게 구성됨
- 성별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적 절차는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검토의견 통보 -> 반영계획 제출 -> 반영계획 관리 등으로 크게 구분됨
  - 이외에 기능상 중요한 절차는 제시된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교육과 컨설팅이 포함됨

<그림 3-6>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요약

단계	내용	중양장관	지방자단체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부처(부서) 협의 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	해당 부처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 작성제외법령인 경우 '제외통보'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1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중앙: 법제처 심사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해당 부처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1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소개된 절차 외에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
- 성별영향평가는 이러한 평가도 중요하나, 이후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이것이 법 제12조에 제시된 '정책개선 실적관리'의 내용임
  - 이 과정은 개선의견 반영 계획관리와 개선실적 점검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종합분석보고를 하고 있음
- (1)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개선 및 실적관리 절차
- 정책개선 실적관리(법 제12조 관련)의 절차와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별영향평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실효적 활동으로 판단됨

- ① 개선의견 반영계획 관리
- (대상)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정책
- (주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 확인 후 개선의견 수용 여부 등을 관리
   ※ GIA시스템>성별영향평가>반영계획 관리 메뉴 이용
- (절차)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중 하나를 체크하고 확인 후 과제별 수용 항목 및 불수용 사유 등을 GIA시스템에 입력하여야 과제가 종료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해당 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 검토의견으로 통보한 개선항목 수가 아닌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개선 의견을 수용한 항목 수를 의미함

(하나의 과제에서 여러 개의 개선항목이 나올 수 있으며, 수용한 항목 수만큼 표시)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반드시 이유를 입력
- ② 개선실적 점검
- (법령) 2012~2021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계획·사업) 2020~2021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서를 반드시 첨부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2012~2020년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기관별 종합 결과보고를 통해 점검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 (2) 성별영향평가의 종합분석보고 절차
- ①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제출(영 제6조)
- 기관별로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반영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2월말까지)
- ②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제출(법 제12조 및 영 제9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

#### 6) 평가지표

- 성별영향평가는 먼저, 평가대상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음
  - 여기서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지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관이 작성해야하는 성별영향평가서의 세부사항은 성별구분 또는 고정 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 참여 그리고 성별통계 등 4개 영역임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표 3-6> 성별영향평가의 점검 지표 요약

항목	점검 내용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 하는 부상의 등급 판정 규정이나 훈·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훈장 크기를 달리 하는 규정		
I.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반영		
	1-3.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에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Ⅱ.성별특성	<ul> <li>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li> <li>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li> <li>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li> </ul>		
Ⅲ.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		
	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IV.성별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 직접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계획 중심의 성별영향평가에 제시된 내용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기관들은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영향발생 가능성,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측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7> 성별영향평가의 점검항목 및 세부내용 요약

항목		점검 내용	
I.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 화적·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 하는 지 점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 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지 점검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II.전략 및 중점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②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 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신설·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	

### 7) 평가방법

-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 결과 처리 등 모든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lawmaking. go.kr)를 통해 진행됨

# 5. 유사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 1) 유사제도 비교 결과 요약

-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4개 제도-문화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 소개함
  - 모두 7개의 관점-개념, 목적, 대상, 유형, 평가절차,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기준으로 살펴봄
- ㅇ 유사제도 비교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표 3-8> 기존 영향평가 제도의 비교 요약

	문화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근 가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인권 경영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시행. 국 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 조항 삽입 은 진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 령 제30조~32조에 부패영항평가 실 시, 평가항목, 자료 요청, 결과 통보 등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 가법(이하 "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 행규칙 등
목 ?	정부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 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유도		법령내 불필요하게 사용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통한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부패취 약 법제도에 대한 합리적 원인과 평 가, 입법 및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재 량의 적정화 등 지향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 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대 ?	정부의 <u>정책사업이나 계획</u> 중 문화 장	가이드라인 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일정규모의 기관과 지방공기업이나 지지체출연기관도 포함	모든 법령과 행정규칙 그리고 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포함. 다만 기 관특성을 반영한 평기체계 구축과 운영의 자율성 인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포함)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시업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등
О Т	자체평가(약식평가, 내부 주체)와 전 명 문평가(기본평가, 심층평가, 전략평 가 등. 제3자 추진)	기관의 인권영향평기와 기관이 추진 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로 구분	재.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등 3가지 유형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에 대한 평가 별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평가절차	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상 평가절차는 계획수립,	3가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 일반적 절차는 체크리스트 및 성

	지침에 따라 평가 시행 및 결과 통보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3의 기관이 수행하고 결과 통보	자료수집,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의 형태이며, 공공기관은 자체진단을 통 한 결과를 공표 및 사후조치를 포함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나, 해당기관 그리고 관계기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진행. 위원회는 권고안 도출 및 사면 통보	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검토의 견 통보 -> 반영계획 제출 -> 반영 계획 관리 등으로 크게 구분 - 이외 정책개선 실적관리와 종합분 석보고, 나아가 각 단계별 교육과 컨 설팅 운영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 3대 영역에 6개 지표로 구성. 전 문평가는 여기에 특성화 지표 반영	2019년 제시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안에는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인권보호, 환경권보장, 소비자인권등 10개 분야에 항목-지표 등 체계로 다양한 항목의 체크리스트 구성	4가지 영역-준수, 집행, 부패통제, 행정절차 등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 별 3가지 관점에서 정성적 진단	- 성별영향분석서에는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참여 그리고 성별통계 등 4개 영역 - 계획중심의 평가에는 성별영향발생 가능성,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측정
평가방법	전문가평가단운영 및 평가, 문헌분 석,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관련자 FGI, 관련자 설문조사, 다면평가 등	기관별 인권경영위원회를 외부인이 과반이 넘도록 구성하여 체크리스트 의 확정, 자체 점검 및 결과보고와 개선과제 환류 등으로 운영	권익위원회가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 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부패영 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에 포함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 행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기관에 권고 형태의 서면으로 통보	- 성별영항평가시스템(http://gja.mogef. go.kr)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 결과 처리 등 모든 성별영항평가 절 차를 진행 -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항평가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lawmaking. go.kr)를 통해 진행

#### 2) 본 과업에 시사점

- 명확한 추진 근거의 확보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경우, 예술인의 지윈 및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명시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또한 근거법에 따를 경우, 본 영향평가는 국가기관 등 미 예술지원기관의 자체적 시행이 명문화되어 있음
- 다만, 법에 명시된 실효적 효과를 도출 및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도개선에 대한 기본적 책무는 분명함
- ㅇ 영향평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제시 필요
  - 본 제도의 목적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법 제3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책무(법 제5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법 제3장(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과 제4장(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그리고 제6장(구제 및 시정 조치)에서 구체화된 예술인의 소극적 또는 지원적 역할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는 목적을 포함하여야 함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대상 구체화 필요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범위와 대상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유사제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영향평가의 실체적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정부로부터 예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탁받는 기관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기능적 측면에서 예술지원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나, 결국 평가는 해당 사업이 아닌 해당사업(기능)을 주관하는 기관이 대상일 수밖에 없음. 다만, 인권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는 대상으로 기관과 기능으로 사업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단일 유형의 영향평가를 설계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업 및 기능적 연계에 대한 고민 필요
  - 유사 평가제도와 달리, 본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해당기관이 자체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이 법령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 하여 자체 정화 및 점검활동을 추진해야 함
  - 다만 실효성과 영향평가제도 마련의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제도의 기본적 틀,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 리스트(안), 기관이 관련 계획수립부터 실행 및 점검과 환류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은 제시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개념도 정립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예술 인권리보장과 보호 수준에 대한 확인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요구됨
  - 이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 피평가대상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은 필요함
-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제시하여 기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유사제도 및 예술인권리보장에 실효적일 수 있도록 운영 유도
  - 본 평가제도는 단일한 평가유형으로 설계되어 평가절차도 단순할 수 있음
  - 하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사전계획수립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점검과 환류 등의 체계화는 물론, 부패영향평가와 같은 평가와 환류 및 이해관계자 협업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함
  -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평가절차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목소리가 영향평가 계획의 수립부터 환류까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절차상 그리고 방법상의 내용 구체화 필요

- 성별영향평가에서처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도 추진절차(단계)별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실효적 운영 및 개선 가능성 제고 필요
- 정부가 포괄적인 평가지표(또는 자체평가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되,
   기관이 기관 또는 사업단위에서 예술인권리보장 노력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이드(평가지표) 라인 제시 필요
  - 부패영향평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같이 소수의 구체화된 지표 또는 포괄적인 정책과 법령의 점검체계 형태의 강점인 명확성 확보와 인권 영향평가와 같이 포괄적이고 영역별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형태로 방향을 주는 방법 등의 장단점 분석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가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보다 촘촘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필요
- 예술지원사업관련 주체와 사업의 보다 다양한 부분 점검 그리고 권리 보호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는 평가방법의 제시 필요
  - 유사 영향평가제도들이 모두 자체평가이든, 전문가가 포함된 외부평가 이든 영향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등에 제약이 있음. 즉, 평가결과가 기관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운영에 분명하게 환류되어 개선된 이후의 효과를 점검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제도는 자체평가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체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평가를 시행할뿐 아니라 평가실행계획의 수립, 평가체크리스트(평가지표) 개발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대안 도출 그리고 사후 개선효과 확인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Ⅳ. 예술인구	멀리 영향평가	제도	설계
---------	---------	----	----

1.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두 범주	69
2.	예술인권리	보장 체계 구축	73
3.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구분	75

# IV.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설계

# 1.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두 범주

#### 1) 제11조의 함의

- 법 제11조는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예술 지원사업 전에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예술계의 복지 향상 및 성평등 실현 등을 포함하는 정부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복지법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 근본적으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핵심 보호법익으로 하는 보다 성숙한 예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활동에 개입이 금지되고, 예술지원사업에서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이로써 그간 불공정계약 등으로 발생했던 예술계의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었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공정한 업무체계를 기반으로 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예방 및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접근방법이 전환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 2) 영향평가의 주체와 객체로서의 예술지원사업

- ㅇ 법에서 정한 예술인 영향평가의 주체는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임
  - '국기기관등'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 '예술지원기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과 이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 법인, 단체 등임

- 영향평가의 객체로서 예술지원사업은 위의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 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함
  - 법에서는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향평가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와 그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술지원사업의 범위도 공연, 시각, 문학 등 각 분야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평가 지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현실 조직으로서의 영향평가의 주체

- 법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을 영향평가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조직법상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및 모든 예술지원기관이 영향평가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음
- 영향평가의 객체가 예술지원사업임을 상기하면, 실질적으로 예술지원
   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이 영향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 부의 부서와 소속기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서(대표되는 형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공공기관 중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될 것임
  -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지자체의 문화 재단이 있을 것임

- 지방공기업의 경우 법률 해석에 의해서는 영향평가 주체로 포함되나 현실 조직의 성격으로는 영향평가의 주체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공기업이 예술지원사업을 연간사업으로 꾸준히 시행하는 경우는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것임)
  -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 공사 등이 있음
-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과 이들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의 경우에도,
  - 각 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반복성, 사업 규모, 사업 성격에 따라 항시적으로 영향평가의 주체가 되는지 달라지므로 영향평가 지표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표 4-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현황(19개 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 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

#### <표 4-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현황(31개 기관)

구분		공공기관명		
고기어	시장형	-		
공기업	준시장형(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 정 부	기금관리형(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관	위탁집행형(3)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		
		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		
		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		
기타공공기관(25)		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		
		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		
		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표 4-3>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1,256개 기관)

구분	기관별 유형 예시
지방공기업 (411)	지자체별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도시가스공단, 상하수도 등
출자출연기관 (845)	지자체별 문화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기술진흥원 등

#### 4) 영향평가의 두 범주

- 결론적으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두 범주는 영향평가의 주체로서 기관과 객체로서 예술지원사업으로 양분됨
- 현실적인 주체로는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서와 소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공공기관 중 문화예술을 담당 하는 공공기관과
  -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대표되는 형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될 것임
- 영향평가의 객체로서 예술지원사업은 예술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와 개별 분야(공연/영상 예술, 시각 예술, 문학/기타 예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지표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표 4-4>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주체로서 기관의 예시

성격		기관의 예	
국가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예실, 콘텐츠국 등)	
국기기관등	국가기관	해외문화홍보원, 대한민국예술원 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문화본부), 경기도(예술정책과)등	
예술지원기 공공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		영화진홍위원회, 콘텐츠진홍원 등	
관	출자출연기관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등	

# 2. 예술인권리 보장 체계 구축

# 1) 제11조의 구조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규정은 법 제11조 제3항임
  - 법 제11조 제3항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제11조 제3항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 제2항은 예술지원사업 선정 시 심사의 공정성 등을, 제1항은 예술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활동에의 개입 금지를 담고 있기 때문임
- 종합적으로 예술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제1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2항을, 그리고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아울러 이 영향평가는 다른 조, 예를 들면 불공정행위 금지를 담은 제 13조나 예술인권리보장 등을 규정한 제20조 이하의 규정들과도 모두 연계되어 있으므로, 권리보장 체계로서의 영향평가의 구조는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 2) 영향평가 체계 구축시 고려해야 할 워칙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향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예술표현의

자유보장을 핵심으로하되 이에 더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므로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입법목적에서 추구하는 자유, 권리, 평등의 가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실제 영향평가의 주체와 객체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종합하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때 단계별로 공통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는 원칙을 포괄성,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임
  - 포괄성: 지원사업의 특징을 이유로 예술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 투명성: 지원사업의 선정,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투명 하게 공개
  - 책임성: 지원사업 기관의 책무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
  - 신뢰성: 지원사업 기관의 영향평가 결과를 예술계 전반에서 신뢰할수 있도록 수행

#### 3) 영향평가 체계

- 일반적인 영향평가의 추진체계는 추진시스템 마련(계획수립) 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이행 및 공개 - 개선방안 점검 후 반영의 단계를 거침
- 앞서 영향평가의 두 범주를 영향평가의 주체로서 기관과 객체로서 예술 지원사업으로 양분하여 접근하였음
- 기관 평가든 사업 평가든 평가의 추진체계는 다른 분야의 영향평가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다만, 영향평가 실시 단계에서는 특히, 영향평가의 객체로서 예술지원 사업에 관해 평가할 때에는, 인간이 창작하는 모든 예술 분야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예술 분야별 특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추진체계의 개념적 예시



# 3.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구분

# 1) 기관차원의 영향평가

- 기관차원의 영향평가는 예술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대상 기관들이 전사차원에서 예술인권리를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제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임
  - 전사차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적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실제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점검하는지를 자체 평가로 운영
  - 기관차원의 영향평가를 위하여 추진주체의 지정, 추진을 위한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마련과 적용,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개선 등의 활동에 대한 이행을 확인함
  - 기관차원의 영향평가는 전사차원의 예술인권리 보호와 보장을 위한 노력과 사후관리 및 이슈발생에 대한 대응 등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점검 하여, 기관 및 기관차원에서 시행하는 예술지원사업의 건전성 확보와 예술인권리의 실질적·실효적 보호와 보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2) 사업차원의 영향평가

#### (1) 예술분야의 구분

- 영향평가의 객체로서 예술지원사업에 관해 평가할 때 각 예술 분야별
   특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예술분야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특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음(조사 기간 2020.1.1. ~2020.12.31.)
  - 이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수행했는데, 조사대상을 미술, 대중음악 등 총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음
- 그리고 조사항목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를 묻는 항목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활동분야의 결과가 나타났음
  - 미술(24%), 대중음악(15.4%), 음악(9.3%), 연극(9.1%), 문학(8.1%), 국악(5.8%), 영화(5.5%), 무용(5.3%), 사진(5.0%), 방송연예(4.9%), 공예(2.4%), 건축(2.2%), 만화(2.1%), 기타(1.5%)

#### (2) 사업차원의 영향평가에서의 분류

-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및 예술인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는 모든 예술 분야별로 개개의 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하게 세분화된 영향평가 지표는 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도 있고 분야별 특징을 모두 반영하다 보면 명목상의 평가로만 진행될 우려도 존재함

- 다음으로 종사자 비율별로 분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5% 내외의 종사자 구간을 구분해서 미술, 대중음악+음악, 연극+문학+국악, 기타로 구분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종 분야가 같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 불합리 함이 발생하여 오히려 예술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마지막으로 유사 분야별로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이 있음.
   공연/영상 예술, 시각 예술, 문학/기타 예술 분야로 분류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임.
  - 문학/기타 분야에 이종 분야가 다소 많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종사자 비율과 유사 분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4-5>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사업차원)의 영향평가 지표 세분화 방향

사업차원의 영향평가 지표(공통)	분야별 영향평가 지표		
예술분야 영향평가 지표(공통)	공연/영상 예술 분야 (대중음악, 음악, 연극, 국악, 영화, 무용, 방송) 시각 예술 분야 (미술, 사진, 공예, 건축) 문학/기타 예술 분야 (문학, 만화, 기타)		

- 개념적 차원에서 사업차원의 영향평가는 사업영역과 분야에 따라 차별
   화된 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향지표가 사업차원에 부합하도록 유형화하는 것이 측정과 측정이후 사후관리 및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위해 유용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도 도입 초기 또는 세부단위 사업 적용을 위한 자율 지표를 시행기관에서 자체 발굴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원에서 포괄적인 방향성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제도적 취지와 제도로서 연착륙을 위하여 포괄적 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방향성에서 기관차원의 영향평가지표와 사업차원의 영향평가지표의 구분은 유지하되, 사업차원의 영향평가지표의 세분화는 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기관의 자율지표로 설정하도록 유도함
  - 기관과 사업차원의 영향평가지표 역시, 방향성 차원에서 기관지표는 제도적 기반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기반적 요인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 사업지표는 실제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예술인권리보장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적 지표 POOL을 제시하고자 함
  - 사업유형별 차별화된 지표는 기관의 자율 차원에서 설계하도록 유도함
  - 이 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상의 체크리스트 POOL도 기관차원에서 그리고 사업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제도가 요구하고 사회환경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망라하여 예시적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제시함

# V.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전략설계 개발

1.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계획수립 81
2. 위원회의 구성·운영 ···································
3.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개발87
4. 영향평가 결과분석93
5. 영향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97

# V.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전략설계 개발

- 이 장은 앞서 논의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법적근거(법 제11조 제3항)에 기초하여 영향평가를 계획·시행 그리고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
  - 영향평가의 법적근거로 기관마다 영향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와 운영,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개발, 영향평가의 실시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포괄함
  - 영향평가의 실시계획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시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위원회는 계획안의 심의·의결 그리고 평가결과의 심의·확정 및 개선과제 도출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함
  -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기관별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담당부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기관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영향평가를 자체 또는 외부의 조력을 통해 실시함
  - 영향평가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가 그 결과를 심의·확정하며, 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그 이행을 하고 이행결과에 대해서도 확류함

# 1. 영향평가의 계획수립

#### 1) 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 이를 위해 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 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변경에 있어 사전에 이러한 변화가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1조 제3항)

-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각 기관은 예술인권리 보호와 보장차원에서 매년 기관운영과 예술인지원사업에 있어 사전예방적이고 사후대응체계를 확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영향평가)가 필요
- 따라서 제안하고자 하는 영향평가는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해결 절차에 대한 사항'등을 포함 하여 다각적 점검 필요

# 2) 영향평가의 주체

- 법 취지에 부합하게 기관 자체에서 자체평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으로 판단
  - 다만,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가이드라인 등 기본방향을 연도 별로 배포. 상위평가(점검)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건전성 확보할 필요 성은 인정됨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사전에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예술인권리 보호와 보장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이 필요
  - 실행계획은 기관의 예술인권리 보호·보장의 기본적 지침이며 전략적 접근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하며,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과 적용 그리고 측정에 따른 결과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및 성과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가칭)예술인권리경영위원회와 예술인 권리 보호와 보장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자 지정이 필요함
  - 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절반이 넘어야 하고, 내부위원으로 해당 업무의 총괄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실행계획의 실행력과 기관이 이 계획에 업무추진이 귀속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전담부서 및 전담자는 실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와 관련한 계획, 실행 그리고 결과 및 환류 도출 단계 등 전과정을 운영하는 별도의 부서를

#### 지정하여야 함

## 유사 영향평가 사례의 운영 주체

-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인권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등을 주관하는 부서 (장) 지정 등과 유사한 형태. 다만,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영향평가제도와 통합운영 가능 검토
- \*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기관장(또는 부기관장급 임원)을 포함한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외부 소통을 통해 선정
- \* 인권경영의 경우, 기관내 인권경영 책임관과 업무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시
- 이외에도 기관차원에서도 예술인보호 책임관을 지정하고, 예술인의 불만 처리 및 영향평가를 시행·관리하는 등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예술인권리 경영의 단계적 추진절차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 예술인권리 경영 단계적 추진 절차: 예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술인권리 경영 체계 구축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실시	예술인권리 경영 실행 공개	구제절차 제공
추진 내용	-담당부서 지정 등 -예술인권리 경영 지침 제정 -예술인권리경영 위원회구성 -예술인권리경영 선언 및 공포	-계획수립, 지표마련 -기관운영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주요사업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주요사업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평가 및 공개	-예술인권리 경영 개선 실행 -예술인권리경영 전과정 공개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구제절차 수립 -구제절차 시행 -평가와 개선

○ 기관이 예술인권리 경영을 선언하여 추진할 때도 핵심이 되는 것은 영

향평가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내용임

계회스리

-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사전준비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결과 및 환류단계 등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예시됨

<표 5-2> 예술인권리 경영을 위한 영향평가의 개괄적 업무흐름도

교육

자료 화보

	계석구립	世 <del>五</del>	기표 럭포
준비 단계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위원회 승인 절차	예술인권리 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관계부서 교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담당부서	담당부서	관계부서
	자체점검	평가실시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실행 단계	증빙자료를 근거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증빙자료, 관계 부서 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실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관계부서	예술인권리경영위원회	담당부서
	결과 보고	공개	(활용) 사후관리
결과 단계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보고 -위원회 개선 및 조치사항 도출	-결과보고서 공개(홈페이지 게시 등) -부서별 개선과제 도출 및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	-관계부서 개선 추진 -담당부서 주기적 모니터링
	담당부서	담당부서	관계부서, 담당부서

#### 3) 영향평가의 대상(기관)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명시된 원칙적인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 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하여, 일시에 대상기관에 제도 적용을
   요구할 경우 기관에 별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부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 -> 지방자치단체 예술관련 지원 기관(지방공기업법상 기관과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 예 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들 순으로 점증적 확대를 제안함
  -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그리고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일지라도 기관의 규모와 성격 등에 따라 순차적 시행을 통해 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담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예시적으로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규모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 위원회, 복지재단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규모에 따라 영향평가 제도의 부분적 적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4) 영향평가 대상(기능)

- 예술인의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의 성과 전파의 방해 금지(7조 2항)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8조2항)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 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 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아가 기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시행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9조)
  - 지원사업의 선정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의 공정성 훼손, 심사관련 문서 조작, 심사종료후 심사결과 변경(선정된 지원대상 배제 등)

-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 개입 금지 등(11조)
  - 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개입 및 간섭 금지
  -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공개

#### ○ 불공정 행위의 금지(13조 1항)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예술인 조합활동의 방해금지(14조 4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
-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구제 등 (16~18조)
  -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이를 보호하는 국가 등의 의무 규정
  - ※ 법 16조 3항에서 예술인에 대한 이러한 권리와 권리보호의 대상을 구체

적으로 적시

-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 5.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 법 17조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와 법 18조에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하는 의지와 노력에 대해 적시

# 2. 위원회의 구성·운영

- 예술인권리 보호와 보장을 위하여 각 기관들은 가칭)예술인권리경영위원
   회의 설치 필요
  - 위원회는 예술지원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 기관의 경영전략 또는 경영가치 중 하나로 '예술인권리 보호·보장'을 내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선언적·명시적으로 표출 필요
  - 기관의 최고경영층에서 위원으로 참여는 물론, 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관차원의 임의적·단순선언적 '예술인권리 보호 및 보장'경영을 지양하도록 유도
  - 위원회는 기관의 예술인권리 보호·보장관련 각종 시책과 과제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 보장 필요
- 위원회는 기관의 예술인권리 보호·보장경영을 위하여 경영상에 사전적· 사후적 참여의 보장 및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보유 필요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나, 공통

사항으로 기관의 예술인권리 보호·보장경영 실행계획의 심의·의결,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확정,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확정· 공개, 영향평가 결과의 개선과제 도출과 이행점검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특히, 영향평가에 있어 체크리스트 확정과 평가결과 심의·확정 등은 영향평가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확보의 환경 조성차원에서 중요함
- 원칙적으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기관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위원회 구성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예술인권리경영위원회의 독립적 설치 외에도 제도적 취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유사 위원회(예로, 기 설치된 인권위원회) 또는 기관장이예술인권리 보호·보장을 위해 내·외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도 제도 도입 초기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예로, 기관장 및 기관의 예술인권리 보호·보장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내부적 의사결정 방안도 제도 도입초기에 인정하고, 점증적으로 독립된 위원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함

# 3.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개발

#### 1) 체크리스트의 개념

- 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제시하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보장에 관한 내용을 기관마다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 하는 도구임
  -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는 내용은 예술인 차별금지, 자유침해금지, 공정성 침해금지, 불공정행위금지, 예술인의 조합활동 방해금지, 예술인의 권리 보호 지원 그리고 예술인 성보호지원 등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지원 체계 등 총 8가지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는 기관 스스로 자체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기관 스스로 그리고 기관이 예술인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예술인권리의 보호와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임

- 다만, 기관마다 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개발(즉, 체크리스트)을 요구할 경우,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것을 필요함
-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며, 기관 그리고 기관이 추진하는 예술인지원사업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대상에 따라 보다 구체화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2) 체크리스트 설계과정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의 도출과 개발, 개발안에 대한 점검 그리고 위원회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반영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추진의 프로세스를 체크리스트 설계와 연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음

<표 5-3>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체크리스트 개발) 추진프로세스 예시

	체크라트 도출	체크리스트 점검	예술인권리 경영위원회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공개
기관 운영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기관 확정	예술인권리 경영위원회를 특합 레그리스트 Hot 미	-체크스트 사전 송부	평결를
시업 운영	점검 대상시업 선정 및 체크리스트 도출	통한 체크리스트 보완 및 확정	-사전 검토 및 평가 -최종결과 심의 및 확정	홈페이지 및 이해 관계자와 공유

리스크 도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예술인권리리스크 및 개선과제 도출
결과 반영	-차년도 예술인권리경영계획수립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예술인권리경영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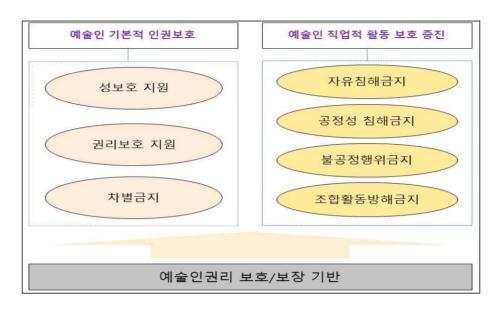
ㅇ 이 연구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앞서 제시한 8개

영역에 따라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예시적으로 도출함

- 8개 영역 중 기관의 예술인권리 보호와 보장을 위한 기반구축을 기초로 하여, 한 축 영역은 예술인의 인간적 권리와 관련한 권리보호지원, 성보호 그리고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다른 한 축은 예술인의 직업적 활동상에서 나타난 각종 권리 침해요인에 대한 금지 내용을 들 수 있음
- 기반구축은 기관차원에서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기관차원에 적용될 체크리스트이고, 그 외 내용은 기관과사업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가 적용될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특히, 사업차원의 지표는 원칙적으로 기관차원의 지표의 틀은 유지하지만, 질문항목에서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이슈가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간소하게 작성함. 이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보호지원 등은 사업차원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반영과 기존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항목을 제외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시점에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도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과 제도적 취지를 반영하여 많은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시하되, 기관의 업무 특성과 개별 사업단위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안 내용의 수정과 변경 등도 반영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제도적 안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제안하는 체크리스트에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제시함. 이는 제도 도입 초기 기관의 부담은 완화하지만,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제안임
    - ※ 별첨의 체크리스트에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을 구분하며, 기관은 필수 항목은 반드시, 권장항목은 영역별로 최소한 2~3개의 항목을 반드시 반영한 영향평 가를 실시해야 함
  - 제도 연착륙을 넘어 각 기관이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관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의 확정 등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본 연구가 도출한 체크리스트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5-1> 본 연구의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념도



# 3) 체크리스트 도출안 제시

-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개념적 체계에 따라 기관차원 106개 항목 그리고 사업영역 58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음
  - 총괄적으로 개발한 체크리스트의 영역별 점검항목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함

<표 5-4> 본 연구의 체크리스트 구성 요약

케그키샤드 서여	점검항목수			
체크리스트 영역	기관차원	사업차원		
1. 예술인권리 보호 조장을 위한 체계구축	40	11		
2. 예술인에 대한 차별금지	8	6		
3. 예술인의 예술활동의 자유침해금지	8	6		
4. 예술인의 예술활동상 공정성 침해금지	13	10		
5. 예술인의 계약 및 지원 등에서 불공정 행위금지	15	10		
6. 예술인의 예술인조합활동방해 금지	8	6		
7. 예술인권리보호 지원 등	5	0		
8. 예술인 성보호지원 등	9	9		
소계	106	58		

# 4) 체크리스트의 적용: 영향평가의 실행

- 기관들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실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얻어
   지는 결과에 대한 신뢰의 확보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등도 가능
  - 따라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업무 흐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표 5-5>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업무추진 흐름도: 예시

	○예술인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추진배경	중심 기관 운영 요구							
T U-11 0	○기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내ㆍ외부 이해관계자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향상 도모를							
	위한 체계적 예술인권리 보호 경영 추진							
계획	○ 예술인권리 경영 추진 배경 및 방향성 공유를 통한 전사적 예술인권리 경영 실행							
계획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특성에 맞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선 및 개발 추진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추진시스템 구축							
	구분	내용						
	○예술인권리 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에돌린턴의 '8 8 급 8구기 및 급 8기     지정	○예술인권리 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확한 역할 부여						
	○예술인권리 보호 제도구축	○예술인권리 경영규범 및 이행지침 제정						
	o 기/에스이기기거어이이형 그 사	○독립성과 신뢰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가)예술인권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예술인권리 경영 관련 기관 현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기관내,						
	파악	외부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 에스이키키 커어 그 인 시기	설문조사 또는 면담조사 등						
	│ ○예술인권리 경영 교육 실시	○집합 예술인권리 경영교육 실시						
	○예술인권리 경영 컨설팅 참여	○예술인권리 경영 실행지원 컨설팅 참여						
실행	○ 예술인권리 경영 확산	○예술인권리 경영 활동 결과 내·외부 공유로 전사적 차원의 예술인권리						
		보호확산						
	<b>1 1</b>							
	예술인권리보호 추진 기반 마련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절차 구축							
	평가계획수립	통합 실무 교육						
	영향평가 목적, 원칙, 주체, 기간	서학교기 개부기로 가다 그 0						
	등 계힉	영향평가 세부지표 실무 교육						
	대국민 정보공개	결과보고 및 자문						
		위원회, 경영진에 대한 결과 보고						
	기관 홈페이지 등 결과 공개	전문가 자문 등 개선 방향 도출						
	○ 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선 및 개발							
	기관운영 영향평가	주요사업 영향평가						
	지표수 변동 및 개선	지표수 변동 및 개선사항						
성과분석	○기관, 부서 및 사업단위 추진 성과 분석							
'	○예술인권리경영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1 →	○ 연도별 기관 및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예술인권리경영 등을 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류	점검하여 개선점 분석과 우수시례 확산							
	○지속적 예술인권리경영 교육 및 권리상담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사람중심 경영 실현							

- 체크리스트에 따른 측정을 위하여 응답항목을 설정하고 각 응답항목별
   의미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체크리스트 항목별 응답 항목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초기로 기관 및 관련 사업내 영향평가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자가진단(Self-diagnosis)의 방법을 제안함
  - 제도의 안착 이후,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라 점수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기관입장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의 적용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과 사업 분야 모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 선발과 자체 항목의 개발 적용 등을 제안함
  - 또한 체크리스트별로 몇 점(또는 Likert 5점 척도)을 도출하기보다는 '정상(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그리고 '해당없음' 등의 수준진단 형태를 제안함. 해당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 별첨자료에 체크리스트 응답항목이 반영된 별도 양식 첨부.

<표 5-6> 체크리스트 응답 항목별 진단 의미 요약

진단의견	의미	비고
전 사·( 세 )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른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제도적	
정상(예)	마련 및 해당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보완필요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른 제도적 기반 등이 있으나, 추진	
보선일요	과정에서 향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ما با م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른 구체적 규정 등의 근거가 없고,	
아니오	해당 사례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식한 경우	
경 H 어 O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른 규정 등이 없고, 해당 사례발생	
정보없음	도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체크리스트 항목이 기관(또는 사업)에 있어 적용하여 측	
예정없금	정하기 곤란하거나 과거 해당 사례도 없는 경우	

- 체크리스트에 따른 기관(또는 사업)의 진단은 설문조사 방식을 취하지만 해당 응답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시가 요구됨
  - 체크리스트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항목별로 답변이 필요하고, 답변은 항목에 따른 제도(규정 또는 지침 등)와 해당 사례의 발생과 대응, 또는 항목별로 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응답자는 기관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응답하고

객관적으로 응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 후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임

취합된 자료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임

# 4. 영향평가 결과분석

## 1) 의미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는 지향점이 기관 스스로 기관 그리고 사업 실행(또는 변경)에 있어 예술인권리 보호와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자체 진단하고, 예술인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소홀함이 없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음
  - 따라서 본 영향평가 자체가 진단에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몇 점이고, 타 기관 또는 사업과 비교하여 서열화하거나 전체 점수로 예술인 권리 보호와 증진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각 영역별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기관(또는 사업) 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영역,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을 진단하고, 약점 영역을 개선하는 과제발굴과 추진, 강점 영역에 대한 유지·발전시키는 대안 탐색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향평가의 결과분석은 기관(또는 사업)의 전담 부서가 영향평가 결과가 몇 점인지, 다른 기관에 비해 어떠한 수준인지 보다는 자체적 개선 노력의 과정으로 인식하길 권함
  -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기본적 자료 확인 등이 마무리되면,
     해당 자료를 기초로 분석보고서를 제시해야 함
  - 이 결과분석(보고서)은 기관 또는 사업추진 차원에서 예술인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향후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적시이고, 이것이 몇
     차례 누적되면서 기관 또는 사업 차원에서 과거보다 예술인권리 보호와

#### 보장 수준이 강화될 것을 지향함

# 2) 결과보고서 작성(예시)

-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 그리고 사업의 특성을 반영 하여 작성될 수 있음
  - 특히 기관 또는 사업에 따라 관련 이슈가 노출된 경우 결과보고서는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임
  - 여기서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일반적인 형태와 방향에 대해 예시하고자하며,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지만, 명확하게 측정시점에서 기관(또는 사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 과제의 도출 등을 포함하게 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결과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 영향평가의 개요: 시행목적과 기간, 추진절차 등 당해연도 예술인인권 영향평가에 대한 개괄적 소개 등
  - 평가연도 추진방향과 세부일정: 당해연도 적용 체크리스트 요약 및 전 년 대비 차이점 등 소개, 체크리스트별 응답부서의 제시, 측정 및 보고서 작성 배포, 그리고 환류계획 등에 대한 일정 소개 등
  - 영향평가 결과 분석: 총괄분석과 영역별 분석, 당해연도 측정의 강점과 약점요인 등 분석
  - 평가결과 환류 및 사후관리 방안: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노력의 점검 등 관리 방안 제시
  - 크게 제시한 4가지 요소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목차 그리고 제시하는 내용적 수준은 자체 판단 필요
  - ※ 별첨자료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을 목차 중심으로 제시
-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영향평가 결과분석과 관련하여 예시적인 내용을
   제시함
  - 총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식에 의한 제시가 가능하고 두 방식을 모두

병행하는 것도 긍정적임. 하나는 체크리스트 총괄표에 따른 수준 내용을 제시함

<표 5-7>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총괄표 작성 예시

	점검 항목수 (A)			정사	개선요구 비율			
점검영역		정상 (예)(B)	보완 필요(C)	아니오 (D)	실적 없음	하당 없음	정상 비율 (B/A*100)	비율 [(C+D)/A] *100
1. 예술인권리 보호 조장을 위한 체계구축	23	15	3	3	1	1	65.22	26.09
2. 예술인에 대한 차별금지	8	8	0	0	0	0	100.00	0.00
3. 예술인의 예술활동의 자유침해금지	8	4	2	2	0	0	50.00	50.00
4. 예술인의 예술활동상 공정성 침해금지	13							
5. 예술인의 계약 및 지원 등에서 불공정 행위금지	17							
6. 예술인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금지	8							
7. 예술인권리보호 지원 등	5							
8. 예술인 성보호지원 등	9							

- 다른 하나는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기관(또는 사업)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진단 등 자체 진단이 가능함

<그림 5-2>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총괄표 작성 예시

		정상	宏
		비율	비율
1. 예술인권리보호 조장을 위한 체계 구축	1. 예술인권리 보호 조장을 위한 체계 구축	92	80
100 80 99 8. 예술인 성보호지원 등 30 70 8. 예술인 성보호지원 등 3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2. 예술인에 대한 차별금지	71.5	80
71.5°	3. 예술인의 예술활동의 지유침해금지	55.6	80
7. 예술인 권리보호지원 등 55.8 80 자유침해금지	4. 예술인의 예술활동상 공정성 침해금지	82.6	80
57.5 6. 예술인의 예술인조합 <sub>80</sub> 96. 예술인의 예술인의 예술활동상	5. 예술인의 계약 및 지원에서 불공정 행위금지	75.7	80
활동방해금지 <sup>7</sup> 567 5. 예술인의계약 및	6. 예술인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금지	37.5	80
지원에서 불공정행위금지	7. 예술인권리 보호 지원 등	100	80
	8. 예술인 성보호자원 등	100	80

- 앞서 제시한 두 사례 중 전자는 100점 만점에 달성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절대적 기준에서 미흡 또는 개선사항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후자는 영향평가의 영역별 목표치를 설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목표와 실적간에 괴리(gap)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과 전체차원의 개선 영역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장점이 있음
- 분석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 중 다른 하나는 개선과제의 도출과 이행에 대한 내용일 것임
  - 앞서 분석된 총괄표와 분석내용을 토대로 개선방향의 설정은 위원회와 영향평가 전담부서 차원에서 가능하나, 실제 개선사항의 구체화와 실천은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영역과 항목별 사업부서 차원에서 이루어짐
  - 따라서 분석보고서상에서는 약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진단결과를 요약 하여 개선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만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음
  - 추후,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각 부서에 전달되면 해당 부서에서 개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도출 및 실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추진 해야 하고, 영향평가 전담부서는 주기적으로 각 부서의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영향평가의 전담부서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개선 및 개선권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양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8>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개선 및 개선권고 사항 작성 예시

부문	영역	과제구분		개선·개선권고사항				
	8.예술인권리보호		단기	ㅇ 고충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 노력 필요				
	지원 등			- 기존 구제절차 운영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 미흡 등				
기관	9.예술인 성보호지원 등	개선		으로 인지도 낮음. 고충제도 실효성 점검 보완 등				
				ㅇ 예술인권리 보호 관련 일부 사업부서 및 직원들의 성				
운영				보호 관련 교육이수율 낮음				
				-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교육 컨텐츠와 강의법 등에 대				
				한 우수 내용 발굴 및 활용 등				
ا ح م	1.예술강사지원		장기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규모 확대 필요. 이를 위한 추				
주요		기타		가지원예술강사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사업				이해 제고 필요.				
				ㅇ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인식이 강하고, 현지주민 등 일반국민 인권보			여전히 인식이 강하고, 현지주민 등 일반국민 인권보호				
	기타의견			분야 관련, 타 기관에서 주변 상권 대상 갑질 이슈가 불				
				거진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 임직원 교육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5. 영향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 영향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평가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공개된 결과에 포함된 개선 및 권고 방향에 따라 해당부서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것임
  -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는 위원회의 결정과 담당부서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의 공개범위를 정하여 공개함
  - 공개대상은 기관 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에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다만, 평가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임
  -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관련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관부서 역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및 사후관리활동을 할 수 있음
  - 평가보고서 내에 포함된 개선 및 개선권고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당 과제의 방향의 담당부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설정할뿐만

아니라 연간 추진 계획을 일정단위까지 설정하여 추진 및 관리함

- 위원회와 영향평가 전담부서는 각 부서의 개선과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집하여 다음 평가시기까지 개선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은 각 부서가 제시한 개선과제의 일정별 추진실적을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어떠한 활동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도 가능함
  - 여타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는 내부평가에 해당 노력에 대한 평가지표로 반영한다거나 경영혁신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을 할 경우 별도의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실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여 평가결과 공개 이후 성과관리 활동을
   확인하고 추가적 개선활동을 독려하는 방안도 가능함
  - 예술인권리경영위원회는 최소 연간 2~3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함. 통상 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권고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함
  -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위원회 개최 회수와 개최 안건의 일반적 내용은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평가지표와 평가방법) 확정,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와 환류, 환류활동에 대한 점검 등으로 3회, 또는 경우에 따라 2회 이상 개최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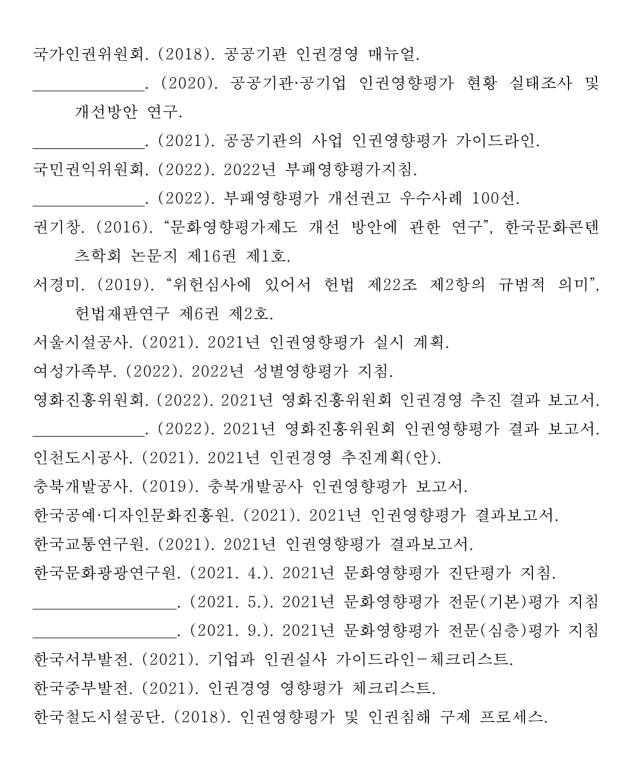
# VI. 결론

- 본 연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예술인권리 영향평 가제도의 내용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시작됨
  - 법 제11조 3항이 제시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과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사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지침과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예술인권리 영향평가의 도입 시점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연구와 체크리스트 개발을 추진하였을 뿐만아니라 제도의 연착륙과 평가대상 집단(또는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율성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이 연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취지와 지향가치 등을 분석하여 영향평가제도 설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에 반영함
  -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 예술인권리, 예술인권리 보호와 증진 그리고 영향평가제도의 기능적 측면 등을 해석하여 제도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 체크리스트 설계는 기관과 사업측면에서 중복되더라도 별도 설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전면적 참여 그리고 예술인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들의 개별 사업단위 점검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음
- 연구결과,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계획수립·위원회 구성과 운영·체크 리스트의 개발과 측정·평가결과의 확정 그리고 결과환류 및 사후관리 등 차워에서 각 기관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다루었으며, 특히 법과 시행령에서 강조하는 사항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예술인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영향평가의 운영주체는 기관내에 전담부서(자)의 지정이 필요하나, 업무 성격상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예술인권리경영위원회를 제안함
- 체크리스트 설계는 법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영역, 예술인의 차별금지, 자유침해금지, 공정성침해금지, 불공정행위금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금지, 예술인권리 보호 지원 그리고 예술인 성보호 지원 등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지원체계, 나아가 개별 사업단위 추진을 위한 기반적 요소들을 제시함. 또한 사업단위 평가의 경우 개별사업의 자율 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주체가 자율지표의 설계도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단위 지표 91개와 사업단위 지표 59개 그리고 기관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반영은 물론, 제시된 지표 중 기관과 사업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지표의 배제와 선택 등에 대한 자율권도 부여함
- 평가결과 보고서의 작성의 의미와 이를 활용하여 예술인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한 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함
- 이 연구는 5가지 단계마다 예시적인 사항을 적시하여 기관 스스로 예술인 권리경영 그리고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적시하고자 하였음
- 다만,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연착륙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기관 스스로 체크리스트의 설계 등 기관과 사업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제도 도입 초기에 따른 이러한 자율성은 제도의 연착륙만큼 기관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나아가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적 취지 외에 기관 스스로 예술인권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자생적으로 개선 및 수준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과 연찬 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https://cupact.co.kr/intro/intro2.do(문화영향평가)